
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(안 제3조제2항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김 성 완)